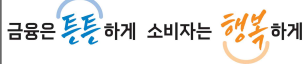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보도	2026.10.22.(목) 조간	배포	2026.10.21.(수)
담당부서	연금감독실 연금혁신팀	책임자	팀장 석진우 (02-3145-5186)
		담당자	선임 서정 (02-3145-5193)

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 - 가입부터 연금수령까지... 연금저축 가입자가 “꼭”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-

주요 내용

◆ 최근 **안정적인 노후생활**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, '26.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증가*

* 적립금(조원) : ('24년) 178.9 → ('25년) 198.2(+10.8%) → ('26.2분기) 224.8(+13.4%)

○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등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부족에 따른 연금 관련 분쟁민원 또한 지속 제기

>>> 이에 **주요 분쟁사례**를 바탕으로 **연금저축 가입자**들이 **유의**해야 할 **사항**에 대해 안내하여 **소비자 피해를 예방**하고자 함

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

-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,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**
-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부득이한 인출인 경우에만 연금소득세(3.3%~5.5%)가 부과됩니다.**
 -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**6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**해야 하며, 인출 사유에 따라 **인출금액이 한정**될 수 있습니다.
- 연금 수령 중에도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**
 - 연금 수령 시 **운용수익 증감**에 따라 수령 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, **적립금 종류별로 인출순서 및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**되므로 **원천징수 세액**에 따라 수령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계좌 계좌이체 신청 시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계좌이체 전 제한 사유를 확인**해 보시기 바랍니다.

1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확정된 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분쟁 사례

☒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**연금개시일이** 도래하여 **지급예정 연금**을 안내받았으나, 가입 당시 받은 **가입설계서**에 기재된 **연금보다 과소***하여 민원을 제기

* 예) 적용이율이 가입시점(90년대 후반) 11.25%에서 4.0%(최저보증이율)까지 하락

- ① **(기본연금)**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*의 경우 가입 이후 **적용이율 변동**에 따라 **연금 금액**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* 납입한 보험료(적립부분 순보험료)를 적용이율로 운용하여 연금(적립금)을 산정하며, 시장실세금리 변동에 적용이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
- **가입설계서** 등에 안내된 연금은 대부분 가입 당시 **적용이율**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**예상 연금***이므로, **적용이율 하락** 시 실제 지급받는 연금은 예상 연금 대비 **감소**할 수 있습니다.
- * 예)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5%인 경우, 연금 종료일까지 적용이율이 5%로 고정되어 이자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예상 연금을 산출하여 안내
-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**금리연동형 상품여부, 적용이율, 최저보장이율** 등에 대한 **설명**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분쟁 사례

☒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**계약자 배당금** 대비 실제 지급 예정인 **배당금이 과소***하며, **최저보장이율이 보장되지 않아** 민원을 제기

* 예) 가입 당시(90년대 후반) 안내받은 예상 배당금(매년 약 900만원)과 실제 배당금(매년 약 19만원)간 차이 발생

- ② **(계약자 배당금)**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 시 **계약자 배당금**(증액연금, 가산연금)을 받을 수 있으나,
- **배당금**은 보험회사의 **경영성과**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**예상 배당금***과 **실제 배당금**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* 예) 금리차배당금(정기예금이율과 보험상품 예정이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)에 대해 이율 차이가 연금 종료일까지 고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예상 배당금을 산출하여 안내
- 또한 기본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에 적용되는 **최저보장이율**은 **배당금**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에 **어려우므로**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2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중도인출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분쟁 사례

☑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 하였으나, 사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, 해지 전 안내받은 것보다 해지환급금이 과소하여 민원을 제기

☑ 부득이한 인출*에 해당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하였으나 일부 적립금(인출한도 이상 금액)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

* 연금계좌 가입자가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

□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(해지)할 경우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어 납입금 대비 해지환급금이 과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단,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될 수 있으나,

-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

- 일부 사유의 경우 인출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
※ 부득이한 인출(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)

사 유 ^{주1)}	인출한도
천재지변	X
가입자의 사망	X
가입자의 해외이주	X
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,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	O ^{주2)}
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	X
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X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	O ^{주2)}

주1) 사유별로 증빙자료는 다를 수 있으며,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제출 필요

주2) 의료비(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른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) + 가입자 본인의 휴직(휴업) 월수×15만원 + 200만원

3 연금 수령 중에도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분쟁 사례

☑ 연금을 개시(확정기간형*, 정액형**)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, 연금이 복리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연금이 감소(약 4만원)하여 민원을 제기

* 가입자가 설정한 일정 기간(10년, 20년 등)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

** 매년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

① 연금수령방식을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한 경우 적립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금수령 연차 등을 고려하여 연금을 산정하는데,

○ 연금 수령 중 (보험)적용이율 및 (펀드)수익률 변동에 따라 운용수익이 변동되는 경우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* 예) 연금저축보험 개시 시점에 당시 적용이율로 지급 종료시까지 이율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여, 연금 종료일까지의 (예상)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연금을 계산하는데,

매년 계약해당일에 당시 적용이율에 따라 연금을 재계산하므로 전년 대비 적용이율이 감소/증가하는 경우 연금도 감소/증가할 수 있습니다.

분쟁 사례

☑ '15년부터 연금을 개시(확정기간, 정액형)하여 연금(매월 약 32만원)을 지급받고 있었으나, '21년부터 세금이 부과되어 지급받던 연금(매월 약 30만원)이 감소하여 민원을 제기

② 연금저축 적립금은 크게 과세제외금액, 이연퇴직소득, 과세대상소득(세액 공제받은 납입금액 및 운용수익)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

○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 시 연금저축 적립금 종류별로 인출순서 및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,

-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면 수령하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연금저축 적립금 종류별 인출순서 및 연금수령 시 과세기준

인출순서	① 과세제외금액	→	② 이연퇴직소득	→	③ 과세대상소득
과세기준	제외		퇴직소득세의 50%~70% ^{주1)}		3.3%~5.5% 세율 적용 ^{주2)}

주1)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70%, 10년 초과~20년 이하 60%, 20년 초과 50% 납부

주2) 연금수령액이 연간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.5%, 70세 이상~80세 미만 4.4%, 80세 이상 3.3% 적용

4 연금저축계좌 계좌이체 신청 시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분쟁 사례

☑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하려 하였으나 약관대출이 존재하여 이체가 거부되어 민원을 제기

□ 연금계좌 변경 시 계좌이체 제도*를 이용해야 페널티**가 부과되지 않지만,

*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)

**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
○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※ 계좌이체 제한 사유

- ① 연금 수령 중인 계좌로 계좌이체는 불가능
- ②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는 상품 특성상 계좌이체 불가능
- ③ 계좌 내 일부 금액의 계좌이체는 제한, 신규 또는 기존 계좌로의 전액 이체만 가능
- ④ '13.3.1.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'13.3.1.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계좌이체는 제한
- ⑤ 압류, 가압류, 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 일부 계좌는 계좌이체 불가능

※ 동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예시 및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, 보험약관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, 세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재정경제부·국세청에 있으며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참 고 연금저축 관련 주요 FAQ

※ 세부 사항은 각 상품의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세제 관련 사항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 연금저축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)의 납입한도는 연간 1,800만원*이며,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까지 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(총급여액)에 따라 공제율은 12~15%(지방소득세 미포함)**입니다.

*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, 주택차액 등 제외

** 종합소득금액(총급여액) 4.5천만원(5.5천만원) 이하 15%, 4.5천만원(5.5천만원) 초과 12%

Q 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- ①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(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제외)하고 ②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인 경우 연금 수령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
$$\text{연금수령한도*} = 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}{(\text{11-연금수령연차})} \times \frac{120}{100}$$

*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

Q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?

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(과세대상)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(3.3%~5.5%, 지방소득세 포함)로 분리과세됩니다.

다만,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중 선택 가능합니다.

Q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나요?

연금저축계좌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.